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1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원칙 (안 제4조, 안제5조)

다.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 등(안 제6조 내지 제10조)

라. 관리·운영의 위탁관련 사항 (안 제11조 내지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7.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으로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8.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로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반환 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청소년시설 (제4조 관련)

종 류	시 설 명	위 치	기 능
청소년활동시설	강서청소년회관	공항대로 42길 23-19(내발산동)	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항대로 42길 23-19(내발산동)	상담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공 항 공 부 방	송정로 45(공항동)	이용시설
	발 산 공 부 방	강서로47길 72(내발산동)	
	화 곡 공 부 방	곰달래로 79(화곡동)	
	염 창 공 부 방	공항대로59다길 80(염창동)	
	방 화 공 부 방	초원로11길 19(방화동)	
	내 발 산 공 부 방	강서로52길 89(내발산동)	

[별표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제8조 관련)

1.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료 대상	1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미취학 아동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대학생, 성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2,400	36,800	
탁구장 (단식)	미취학 아동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대학생, 성인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헬스장	미취학 아동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초·중·고생	1,700	6,800	13,600	20,400	27,200	30,600	34,700	
	대학생, 성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45,000	51,000	
당구장	대학생, 성인	4,800	초, 중, 고생		3,600				
공부방	아동·청소년	500	12,500 (월간 사용료)						
	성인	1000	25,000 (월간 사용료)						
시설 대관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본 3시간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

구 분	강습료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초·중·고생, 미취학아동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음악	초·중·고생, 미취학아동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대학생, 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초·중·고생, 미취학아동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초·중·고생, 미취학아동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문예 및 창작	초·중·고생, 미취학아동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상담	초·중·고생, 미취학아동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대학생, 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각종 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						

-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 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사용료 등 할인

- 1)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 3) 각각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 4) 탁구장 이용시 복식사용은 개별 단식 2대분 사용금액의 30% 할인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10조 관련)

1. 사용료 및 강습료

구분		반환사유 발생 일	반환금액
제10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작 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시작 후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0조제2항 제2호	1개월이내	시작 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1/3 경과전	납부한 사용료의 2/3
		1/2 경과전	납부한 사용료의 1/2
		1/2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초과	시작 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금액 (1개월이내 기준에 준하여 산출)과 나머지 달의 강습료 전액

2. 대관료

구분		반환사유 발생 일	반환금액
제10조의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0조의제2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함.

